

신선농산물 수입시 필요서류

□ 신선농산물 수입 시 필요서류

○ 관련 법령

- 신선농산물 수입에 대한 무역부장관령 2013년 제 16호,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6/M-DAG/PER/4/2013 tentang ketentuan impor produk hortikultura (nomor 16/M-DAG/PER/4/2013)

○ 주요 내용

- 수입 작물에 대하여, 작물을 신선 과일, 야채, 약재, 수생식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작물 수입은 무역부 장관에 의해 결정된 기술적 검증기준에 따라 원산지의 선적항에서 확인 된 이후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가능.
- 필요서류

1. 원산지 와 선적항
2. HS코드
3. 종류와 수량
4. 선적시간
5. 선하장소
6. (포장된 경우) 식품정보 와 포장재질 정보
7. 위생증명서 (Sertifikat kesehatan) (수출국에서 발급)
8. 신선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
9. 원산지 증명서 (Certificate of Origin)
10. 실험증명서

□ 특이사항 : 위생증명서(Health Certificate) 필요

- 해당법령 22조에 따르면 신선농산물 수입을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서류요건 중 위생증명서 (Health Certificate) 가 포함되어 있음.